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10. 29 선고 2019가단33218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---

## 전 문

**원고**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라이프

담당변호사 송진규, 유승호, 박기혁, 김선인, 김도연, 김정한

**피고**1. 주식회사 B

2. C

3. D

4. E

5. F

6. G

피고 1, 2, 3, 5, 6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기

담당변호사 강재룡

**변론 종결**2020. 9. 10.

**판결 선고**2020. 10. 29.

## 주 문

1. 피고 F, G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
2. 원고에게,

가. 피고 주식회사 B, C, D은 연대하여 244,873,181원을,

나. 피고 E은 피고 주식회사 B, C, D과 연대하여 위 가.항 기재 금원 중 224,671,377원을 각 지급하라.

3.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, C, D, E와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, 원고와 피고 F, G와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.

4.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### 청 구 취 지

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F, G은 피고 주식회사 B, C, D과 연대하여 주문 제2. 가.항 기재 금원 중 각 48,974,636원을 지급하라는 판결.

### 이 유

#### 1. 피고 F, G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

갑 제1호증, 갑 제10호증,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.

가. 원고는 소외 망 H와 피고 주식회사 B, C, D, E 등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8가단291347호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9. 9. 30.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은 같은 해 11. 14. 확정되었다.

나. 그 후 원고는 시효연장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196615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9. 10. 9.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. 당시 원고는 소외 망 H를 피고에 포함하지 않았는데, H는 이미 2006년경 사망하였고, 이 사건 피고 F, G 등을 포함한 H의 상속인들은 2006. 3. 30.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6느단2828호로 상속한정승인 결정을 받은 상태이었다.

살피건대, 원고의 피고 F, G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소외 망 H의 상속인 중 일부에 대한 소로서 전소인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196615 확정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해 제기된 소이다. 그런데 확정된

위 전소 판결의 당사자에는 소외 망 H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.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,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나,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(대법원 2018. 7. 19.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). 그런데, 피고 F, G에 대한 이 사건 소는 확정된 전소(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196615)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시효중단을 위한 소로서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.

한편, 원고는 위 전소 이전의 소(서울지방법원 98가단291347)의 피고에 소외 망 H가 포함되어 있었고, 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, 이때부터 H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고, 10년의 시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주채무자인 피고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위 전소 판결(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196615)을 득하였으므로 H의 연대보증채무도 시효중단되어(민법 제440조) 위 전소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10년의 시효가 진행되어 H의 상속인인 피고 F, G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 그러나, 위 피고 F, G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어디까지나 전소 확정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해 제기된 소임이 분명하고, 전소 이전의 소의 시효연장을 위해 제기된 소가 아니다(만일, 전소 이전의 소의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시효중단을 위해 제기된 소라고 볼 수 없다). 또한, 원고 주장대로 주채무자, 연대보증인에 대한 시효가 재판상 청구로 인해 중단되었다가 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시효가 진행되다가 후에 주채무자만에 대한 시효중단으로 인해 민법 제440조에 따라 연대보증인에 대한 시효도 중단되었다가 다시 진행하는 것이라면, 연대보증인인 피고 F, G에 대한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.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연장을 위한 판결을 받는 것으로 족하기 때문이다.

따라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.

## **2. 피고 주식회사 B, C, D, E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**

갑 제1 내지 10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,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, 반증 없다.

그렇다면, 주문 제2항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.

### 3. 결론

따라서 원고의 피고 F, G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,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**판사**이회기

별지